

회장 선거 관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지구과학회 정관 제14조 1항 및 제27조 1항에 의거, 회장(수석부회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관리 위원회)

1. 회장(수석부회장) 선거를 위하여 평의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선거관리 위원은 평의원회에서 5명 이내의 선거관리 위원을 추천하고 평의원회 의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평의원회 의장이 임명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공고 및 홍보, 선거권자 명부 관리, 후보자 등록, 투표 및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을 포함하여 회장 선거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 (피선거권과 선거권)

선거권자는 투표 개시 1주일 전까지 최근 3년 간 학회 연회비를 완납한 정회원에 한하며, 피선거권자는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선거일 기준 최근 5년 간 학회 연회비를 완납한 자로 제한한다.

제4조 (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선거권이 있는 정회원 10명 이상의 연명 추천서와 이력사항 및 회장 선거 공약을 기록하여 회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5조 (투표 방법)

1. 투표는 선거권자의 직접 투표로 한다.
2. 투표 방법은 학회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 (후보자 및 당선자 선정)

1. 등록 신청한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유효 투표수 중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인정한다. 단, 후보자의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인정한다.
2. 등록 신청한 후보자가 1명일 경우 찬반 투표를 실시하되,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당선자로 인정한다.

제7조 (기타)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도 회장 선거부터 적용한다.